

#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0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년 2월 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현재 부르는 명칭이 “서울시설공단”인데 반해, 조례상 명칭인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으로 공문서, 계약서 등에 표기하고 있어, 서로 다른 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며,  
- 현재 각종 간판, 홈페이지, 홍보동영상, 안내문, 명함 등이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명 변경 시에도 관련 비용 미발생
- 나.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 되어가는 추세임  
- 부산시설공단, 울산시설공단, 구미시설공단, 수원시설공단 등
- 다. 또한,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란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,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변경(제1조, 제2조, 제9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 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 
다. 협의사항  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사항 없음  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 : 해당사항 없음  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해당사항 없음  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 제외 대상  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원안 동의  
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원안 동의
- 라. 기 타  
(1) 입법예고(2016.11.10.~11.22)결과 : 의견 없음  
(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도 붙임  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오성균 (☎ 2133 - 8132)

##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를 이를 서울시설공단의 명의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설공단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각각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33조제1항제9호마목의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⑧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⑨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4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⑩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⑪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7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u>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 | <u>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</u> 을 설립하고,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<u>관하여 필요</u>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<br>----- <u>서울시설공단</u> -----<br>----- 필요-----. |
| 제2조(법인격) <u>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</u> 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   | 제2조(법인격) <u>서울시설공단</u>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(이사) ① (생략)  | 제9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   |
|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  | ② -----<br>-----.  |
| 1. <u>시설관리공단</u> 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 | 1. <u>서울시설공단</u>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(생략)   | 2. (현행과 같음)  |
| ③ ~ ⑤ (생략) 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 |

**「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**
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의 명칭이 “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”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선언적 형식의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오성균(2133-8132)